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일반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

O 예산 현액 : 78억 9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88억 2천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83억 9천 6백만원

O 미 수 납 액: 4억 3천 2백만원

O 결 손 처 분 : 0원

O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5.1%(전년도 97.2%)임.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계	7,893	8,827	8,396	432	95.1%
세외수입	2,006	2,835	2,520	315	88.9%
경상적세외수입	948	984	983	2	99.8%
재산임대수입	191	256	256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191	256	256	0	100.0%
사용료수입	478	514	514	0	100.0%
기타사용료	478	514	514	0	100.0%
수수료수입	26	18	18	0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6	18	18	0	100.0%
사업수입	22	23	23	0	100.0%
기타사업수입	22	23	23	0	100.0%
이자수입	232	175	173	2	99.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32	172	172	0	100.0%
기타이자수입	0	3	1	2	37.4%
임시적세외수입	1,058	1,851	1,538	313	83.1%
부담금	545	487	487	0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545	487	487	0	100.0%
과징금및과태료등	8	115	64	51	55.6%
변상금	8	115	64	51	55.6%
기타수입	506	1,060	936	124	88.3%
불용품매각대	22	49	49	0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18	110	110	0	99.7%
그외수입	466	901	777	124	86.3%
지난연도수입	0	189	51	138	26.8%
지난연도수입	0	189	51	138	26.8%
지방교부세	387	387	387	0	100.0%
지방교부세	387	387	387	0	100.0%
지방교부세	387	387	387	0	100.0%
특별교부세	387	387	387	0	100.0%
보조금	1,818	1,818	1,818	0	100.0%
국고보조금등	1,818	1,818	1,818	0	100.0%
국고보조금등	1,818	1,818	1,818	0	100.0%
국고보조금	1,818	1,818	1,818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82	3,787	3,670	117	96.9%
보전수입등	3,682	3,787	3,670	117	96.9%
전년도이월금	0	27	27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7	27	0	100.0%
융자금원금수입	3,682	3,760	3,643	117	96.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682	3,760	3,643	117	96.9%

2. 세출결산

O 예 산 액 : 3조 2,989억 8천 3백만원

O 예산증감 : 3,788억 8천 5백만원

O 예산현액: 3조 2,974억 9천 7백만원

O 지 출 액 : 3조 2,897억 6천 8백만원

O 이 월 액 : 1억 7천 9백만원

O 불 용 액: 75억 5천 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2%(전년도 0.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1천 7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67억 2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8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mark>)</mark>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일 반 회 계	3,297,497	3,289,768	179	7,550	0.2%
사 업 예 산 계	112,580	106,980	179	5,420	4.8%
행정지원체계 강화	22,287	19,893	139	2,255	10.1%
물품관리	1,292	1,278	0	14	1.1%
행정장비구매	1,292	1,278	0	14	1.1%
청사관리	20,306	18,022	139	2,145	10.6%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6,730	15,138	0	1,591	9.5%
시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79	333	0	47	12.3%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373	332	0	40	10.8%
시청사 청소관리	1,393	1,387	0	6	0.4%
노후 시설물 개선	443	430	0	13	2.9%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mark>)</mark>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298	292	0	6	1.9%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136	110	0	25	18.7%
시청사 내진보강	555	0	139	416	74.9%
행정관리 지원	689	593	0	96	13.9%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60	58	0	1	2.4%
업무택시제 운영	270	196	0	74	27.6%
주요 시책사업 추진	80	65	0	15	19.2%
주요 시정행사 지원	280	275	0	5	1.7%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7,549	6,851	0	698	9.2%
포상관리	1,411	1,336	0	75	5.3%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936	925	0	11	1.1%
정년 · 명예퇴직자 격려	475	411	0	64	13.5%
인사관리 운영	6,139	5,516	0	623	10.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551	523	0	29	5.2%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101	56	0	45	44.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287	261	0	25	8.8%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78	70	0	7	9.6%
부조급여 지급	2,100	1,945	0	155	7.4%
공무직 노사관리	189	129	0	60	31.8%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833	2,531	0	302	10.6%
인적자원 역량 강화	43,599	42,146	0	1,453	3.3%
교육훈련	11,068	10,103	0	964	8.7%
장기국외훈련	3,555	3,443	0	112	3.2%
단기국외훈련	2,441	2,202	0	240	9.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2	12	0	0	0.1%
국내위탁교육훈련	3,940	3,457	0	483	12.3%
직장교육활성화	655	607	0	47	7.2%
명사초청 특강 운영	19	13	0	5	28.7%
학급적 연및 독대 활화 재	127	83	0	43	34.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mark>)</mark>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25	5	0	20	78.5%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95	93	0	2	2.0%
서울시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200	188	0	12	6.0%
공무원 복지증진	27,289	26,899	0	390	1.4%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9,103	18,829	0	274	1.4%
직원 후생복지 지원	2,018	2,009	0	8	0.4%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355	1,305	0	49	3.6%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625	575	0	49	7.9%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312	306	0	6	1.9%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3,830	3,830	0	0	0.0%
대여학자금 부담금	20	20	0	0	0.0%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28	24	0	3	12.4%
수련원 관리사업	5,243	5,144	0	99	1.9%
연수원 운영	5,243	5,144	0	99	1.9%
시·자치구간공동협력추진	14,325	13,837	21	467	3.3%
시·자치구간공동협력	14,325	13,837	21	467	3.3%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	8,000	0	0	0.0%
자화관 운영 및 주만치 활화 자원	3,751	3,278	21	452	12.0%
시자차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244	242	0	2	0.9%
도로 왕보 및 전사 테 유리 등	230	217	0	13	5.6%
도로 중소 인내설도로 한 등 유원	180	180	0	0	0.0%
17년 주민참여예산(용산구 보 광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25개)	1,620	1,620	0	0	0.0%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00	300	0	0	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19,405	19,221	19	164	0.8%
시민참여 강화	19,405	19,221	19	164	0.8%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울시만 두 발급	903	885	0	18	2.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478	1,470	0	7	0.5%
북한 탈구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92	86	0	5	5.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mark>)</mark>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 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비)	3,222	3,213	0	8	0.3%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 봉사보험 가입 서비스(국비)	212	212	0	0	0.0%
시민 시상제도 운영	112	96	0	16	14.6%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830	816	0	14	1.7%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249	249	0	1	0.3%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25	20	0	5	20.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6,884	6,796	19	69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3,218	3,218	0	0	0.0%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755	755	0	0	0.0%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1,050	1,050	0	0	0.0%
민주열사 30주기 기념사업	173	173	0	0	0.0%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자 위령시업	30	30	0	0	0.0%
선거관리경비	174	154	0	20	11.4%
정보관리강화	4,431	4,107	0	324	7.3%
정보소통혁신	1,136	1,068	0	68	6.0%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642	607	0	35	5.5%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391	384	0	7	1.9%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103	77	0	26	25.3%
기록물 시설관리(일반회계)	3,295	3,039	0	256	7.8%
청도문서고 운영	85	81	0	4	4.9%
기록정보관리	1,900	1,758	0	143	7.5%
서울기록원 운영 기반 준비	210	195	0	15	7.0%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100	1,005	0	95	8.6%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984	925	0	58	5.9%
수련원 관리사업	984	925	0	58	5.9%
수련원유지 및 관리	434	414	0	20	4.6%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97	372	0	25	6.2%
수련원 촉탁계약직(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153	139	0	14	9.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mark>)</mark>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일 반 예 산 계	3,067,992	3,067,992	0	0	0.0%
재무활동(행정국총무과)	2	2	0	0	0.0%
보전지출(행정국총무과)	2	2	0	0	0.0%
반환금 및 기타	2	2	0	0	0.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067,963	3,067,963	0	0	0.0%
자치구교부금(행정국자치행정 과)	3,067,963	3,067,963	0	0	0.0%
조정교부금	3,067,963	3,067,963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27	27	0	0	0.0%
보전지출(행정국자치행정과)	27	27	0	0	0.0%
반환금 및 기타	27	27	0	0	0.0%
행 정 운 영 경 비 계	116,925	114,795	0	2,130	1.8%
행정운영경비(행정국총무과)	3,090	2,726	0	364	11.8%
기본경비	3,090	2,726	0	364	11.8%
기본경비	3,090	2,726	0	364	11.8%
행정운영경비(행정국인사과)	113,204	111,483	0	1,722	1.5%
기본경비	159	158	0	1	0.5%
기본경비	159	158	0	1	0.5%
인력운영비	113,046	111,325	0	1,721	1.5%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13,046	111,325	0	1,721	1.5%
행정운영경비(행정국인력개발과)	82	82	0	0	0.0%
기본경비	82	82	0	0	0.0%
기본경비	82	82	0	0	0.0%
행정운영경비(행정국자치행정과)	131	131	0	0	0.0%
기본경비	131	131	0	0	0.0%
기본경비	131	131	0	0	0.0%
행정운영경비(행정국정보공개정 책과)	345	308	0	37	10.7%
기본경비	345	308	0	37	10.7%
기본경비	345	308	0	37	10.7%
행정운영경비(공무원수련원)	72	65	0	7	10.1%
기본경비	72	65	0	7	10.1%
기본경비	72	65	0	7	10.1%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총3건(일반회계)

○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사무실 물품교체 및 회의실 확충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공공운영비) 사업에서「행정장 비구매」(자산 및 물품 취득비)사업으로

9천 9백만원

○ 청사 대청소 등 청소업무 증가로 발생한 시설 청소원 초과근무 인건비 지출을 위해 「시청사 안내 도우미」(사무관리비) 사업에서 「시청사청소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2천 6백만원

○ 시정기록물 정리실 기간제근로자(속기요원) 충원에 따른 봉급 수당
 등 지출을 위해「기록정보관리」사업내에서 통계목간 전용(사무관리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으로

2천 2백만원 등

총 3건에 1억 4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1건(일반회계)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를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로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내에서 통 계목간 변경으로 총 1건에 5억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총3건

O "AI 가금류 수매"를 위해

7백만원

○ "보궐선거 선거비용 납부"로

1천 4백만원

○ "보궐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로

1억 6천만원 등

총 3건에 1억 8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8.8%)하였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4건, 130억 1천 8백만원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O 사고이월

지반조사 등 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사업기간 추가 소요 사유로 '행정국 총무과'에서 「시청사 내진보강」 사업비

1억 3천 9백만원

조기대선에 따른 동별 설명회 일정 지연에 따라 '주민 자치회활동 안내서' 제작 일정 지연 사유로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비

2천 1백만원

참석자 일정 조정 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 대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비

1천 9백만원

지하터파기 암발파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

128억 3천 9백만원 등

총 4건에 130억 1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O 2017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0억 4천 7백만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7천 1백만원**

총 2개부처 5개 사업에 18억 1천 8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8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을 불용시켰음.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2017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채권현재액은 1,119억 4천 만원으로 2016년도말에 비해 4억 6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채권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액	2017년도말
丁正	현 재 액	계	계 발생액 -		현 재 액
일반회계	111,480	462	6,263	5,801	111,942

-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공유재산은

- 토지 208,913*m*² 8,448억 8천 5백만원

- 건물 191,766m² 4,411억 2백만원

- 기타 102억 2천 4백만원 등

총 1조 2,962억 1천 1백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16년도 말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콘도회원권 신규 매입, 광화문 해치마당 공작물 이전취득 등에 따라 대장가액이 79억원 가량 상승하였음.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밀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丁正	보유현황	증가	감소	보유현황
	합 계 1,288,292		7,919	0	1,296,211
	계	1,287,832	7,919	0	1,295,751
	공용재산	1,150,808	4,457	0	1,155,265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137,024	3,462	0	140,486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460	0	0	46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행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641개, 현재액 51억 4천 8백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 비해 수량은 51개가 증가하고,

현재액은 6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당해연도 증감액						
구분	^년 2016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2017년도말 보 유 현 황	
	Ξ Π	<u>.</u> 10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1 T T T T	
일반	수량 (개)	590	57	1	58	-	7	7	641	
회계	금액 (백만원)	4,487	735	1	736	-	75	75	5,148	

Ⅱ. 특별회계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해당 없음.

2. 세출결산

O 예 산 액 : 17억 3천 5백만원

O 예산증감 : 165억 2천 9백만원

O 예산현액 : 182억 6천 4백만원

O 지 출 액: 54억 2천 6백만원

O 이 월 액 : 128억 3천 8백만원

O 불 용 액: 0원

〈 2017회계연도 행정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8,264	5,426	12,838	-	0.0%
사 업 예 산	18,264	5,426	12,838	_	0.0%
정보관리강화	18,264	5,426	12,838	_	0.0%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건, 128억 3천 8백만원

-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시설비 등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 ▶ 「서울기록원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 사고이월 128억 3천 8백만원

Ⅱ.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예 신	<u></u>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90,841	255,578	255,578	64,737	o 공유재산임대료 : 64,737천원(초과수납) - '17.3월 조례개정으로 임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에 적용되던 층별요율규정 삭제로 시청사 임대수입 증가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5,649	17,974	17,974	△7,675	o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 △7,675천원(부족수납)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예산액 대비 판매수입 감소
이자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2,347	171,698	171,698	△60,649	o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0,649천원(부족수납) - 지속적인 금리 인하 추세 반영하여 편성 당시 적용한 이자율 인하 적용 (1.8% ► 1.0%)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7,899	114,778	63,855	55,956	o 변상금 및 위약금 : 55,956천원(초과수납) - 특정단체 서울광장 장기 무단사용에 따른 수입 증가

예산	산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기타 수입	불용품 매각대	21,750	48,632	48,632	26,882	 불용품 매각대 : 26,882천원(초과수납) 공용차량 공매금액 세입예산액 대비 증가 및 정수감축에 따른 차량 추가 매각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881	110,371	110,063	92,182	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 : 92,182천원(초과수납) 자치회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
	그외수입	466,029	900,941	777,141	311,112	고외수입: 311,112천원(초과수납) - 자치구직원 수련원시설 이용료 수입 예산액 대비증가 - 부속의료원 진료수입 증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보조금 진행잔액 반납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이 발생했으나, 예산을 미편성하여 매년 시의회의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 행정국은 '기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자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이므로 편성하지 않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상세내역 현황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0	2,857	1,070	1,070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이자 : 746천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이자 : 82천원 찾·동 보조금 관련 이자 : 123천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이자 : 119천원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수입	0	188,669	50,605	50,605	○ 시청사 아낀전기 판매수입 지난연도 미납분 : 850천원 ○ 서울광장 변상금 지난연도 미납분 : 24,816천원 ○ 만사소 하용 납부 거부에 따른 미납액 : 105천원 ○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이자 : 840천원 ○ '16년 부과 부속의원 진료수입 : 6,600천원 ○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정산금 : 11,524천원 ○ 장기국외훈련 정산금 : 5,881천원
전년도 이월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27,416	27,416	27,416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4,331천원 당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199천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6천원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예산과목	2018년도	2017	7년도	2016	6년도	2015년		
메인과숙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이자수입	0	0	1,070	0	76	0	81	
지난연도수입	О	0	50,605	0	9,145	0	3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7,416	0	2,029	0	12,053	

- 매년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는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임.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는바, 행정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대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후속 대처의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 (단위 : 천원)

	6	2017년도		6	2016년도		2015년도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남액 (다음연도이월)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194,734	192,630	2,104	189,959	187,845	2,114	
기타 사용료	0	0	0	523,916	518,203	5,713	522,358	512,278	10,080	
기타 사업수입	0	0	0	21,062	20,212	850	8,952	8,115	837	
민간용자금 외수 이자수입	O	O	0	228,502	227,662	840	331,938	331,938	0	
기타이자 수입	2,857	1,070	1,787	0	0	0	0	0	0	

	6	2017년도			2016년도		6	2015년도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마수납액 (다음연도이월)
변상금 및 위약금	114,778	63,855	50,923	89,488	37,998	51,490	68,826	2,052	66,774
시도비 반환금수입	110,371	110,063	308	82,972	82,689	283	19,835	17,296	2,539
그외수입	900,941	777,141	123,801	611,965	597,760	14,205	1,130,259	1,044,309	85,950
지난연도 수 입	188,669	50,605	138,064	116,162	9,145	107,017	1,263	33	1,230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3,760,000	3,643,000	117,000	3,881,500	3,826,500	55,000	4,657,200	4,586,200	71,000

○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정산 및 수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u>다음연도 이월</u>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53)	431,883	
		소 계 (총무과)	292,880	
총무과	변상금 및 위약금 (5)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50,923	• 체납 5건(50,923천원)
(26)	그외수입 (3)	행정대집행비용 및 간접강제 이행금	109,773	• 체납 3건(109,773천원)
	지난연도 수입	부설주차장 사용료	62	• 체납 1건(62천원)
	T 由 (18)	서울광장 사용료	2,702	• 체납 1건(2,792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117,186	• 체납 9건(117,186천원)
		소송비용 회수	1,125	• 체납 4건(1,125천원)
	서울광장 행정대집행 비용 전년도 체납분		11,108	• 체납 3건(11,108천원)
인사과		소 계 (인사과)	9,540	
(5)	그외수입 (5)	징계부가금(5건)	9,540	• 체납 5건(9,540천원)
		소 계 (인력개발과)	127,427	
	기타이자 수입(1)	힐링센터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등 반납	60	• 이중부과 1건(60천원)
		동호회 집행잔액 반납	4,280	• 체납 1건(4,280천원)
인력 개발과	그외수입 (3)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186	• 체납 1건(186천원)
(9)		암바티트보증금연세료	20	• 체납 1건(20천원)
	지난연도 수입(1)	국외훈련비 정산금	5,881	• 체납 1건(5,881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상환수입	117,000	• 체납 4건(117,000천원)
		소 계 (자치행정과)	2,036	
		주민참여예산 이자반납	1,070	• 체납 3건(1,070천원)
자치 행	기타이자 수입(1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이자반납	602	• 체납 3건(602천원)
정과 (13)		찾동 추진지원단 보조금 이자반납	56	• 체납 4건(56천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치회관 운영비지원 집행잔액 반납	9	• 체납 1건(9천원)
	(3)	찾동 추진지원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99	• 체납 2건(299천원)

-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동호회 집행잔액 반납',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및 '주민참여예산 이자반납'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처리되고 있음.
- 특히, 지원자가 많은 국내외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써 교육수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금에 대한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1))에 근거하여 소요 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훈련비 정산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 이월 내역 〉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그이스이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17,815	납부태만
2015년	그외수입 (2)	국내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훈련비 환수	11,523	납부태만
	지난연도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11,761	●체납자 납부거부로 압류 등 검토중
2016년	수입 (2)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11,524	•체납하여 이월되었으나 독촉고지 등으로 납부완료 ('17. 1. 완납)
2017년	지난연도 수입 (1)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5,881	• 총 체납금 11,761천원 중 '17년 일부납부(5,880천원) 하였으며, 잔액 5,881천원은 '18년 납부 예정

-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내역은 54건에 4억 3천 1백만원으로 전연도(36건, 2억 3천 7백만원) 대비(증 1억 9천 4백만원) 금액과 건수(증 18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1천만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15년 8건, 1억 7천 9백만원 → '16년 8건, 1억 8천 2백만원 → '17년 11건, 3억 4천만원)에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금 '	액 별		건, 선천)
연도	구분	계	10 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7	건수	54	12	15	9	7	11	_
2017	금액	431,883	358	5,308	30,836	54,566	340,815	_
	건수	36	4	11	8	4	9	
2016	금액	237,501	231	4,993	23,530	26,671	182,075	_
	건수	34	4	8	8	6	8	_
2015	금액	240,524	188,26 0	2,467	18,109	40,142	179,617	_
2014	건수	14	5	6	1	_	2	_
2014	금액	73,844	134	1,465	2,244	_	70,000	_
2013	건수	25	11	8	4	1	1	_
2013	금액	61,840	2,009	15,694	9,978	10,000	24,157	_

2. 세출결산

가. 불필요한 예산 전용/변경 지양

- 1) 예산 전용시 불충분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예산낭비
- O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행정장비"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 9백만), "시청사청소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2천 6백만원), "기록정보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2천 2백만원) 총 3건에 1억 4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 전용 현황 〉

예산고	·목	예산액	0	예산의 전	용	예산현액	ᄁᅜᇄ	불용액	
세부사업	통계목	메선뽹	감액	증액	전용일	메선언백	지출액	(불용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955,497	99,318	-		8,856,179	7,588,650	1,267,528 (14.3%)	
행정장비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2,366	-	99,318		1,291,684	1,277,671	14,012 (8.5%)	
시청사 안내도우미	사무관리비	160,960	25,420	-		135,540	110,143	25,396 (18.7%)	
시청사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4,628	_	25,420		980,048	978,303	1,744 (0.1%)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	1,271,678	21,880	-		1,249,790	1,185,293	64,496 (1.9%)	
기록정보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	21,880		21,880	20,890	997 (2.1%)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청사 공간 확충을 위한 임차청사 운영 및 공관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공공운영비로 8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사무실 물품교체 및 회의실 확충을 위해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장비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9천 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전용이용이후에 12억 6천 7백만원(14.3%)의 예산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 "시청사 안내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도 청사 대청소 등 청소업무 증가로 발생한 시설 청소원들의 초과근무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시청사 안내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청사청소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천 5백만원을 전용 하였으나, 전용이후에도 2천 5백만원을 불용(18.7%)처리하였음.
- 행정국은 당초 예산편성시 산출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행정장비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목에서 9천 9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천 4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바, 실소요 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한 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 전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예산 전용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산편성 시 불명확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용

- O 행정국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5억원) 1건에 5억원을 전용하였음.
- "국민운동 단체 등 지원"사업은 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지방재정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5억원)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통계목간 변경사용 하였음.

("국민운동단체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

예산과목		예산액	예신	· 산의 변경사·	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세부사업	통계목	에건쪽	감액	증액	승인일	메진연쫙	시물백	(불 용 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0	500,000	_	' 17.5.4	_	_	_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00	-	500,000	' 17.5.4	500,000	500,000	500,000

- '이전재원'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게 간접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자체재원과는 차이가 존재함.
- 이에 행정국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금을 이전재원으로 편성한 후 자체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관련 예산편성규칙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하겠음.
- 행정국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사업

1) 특별조정교부금 적기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 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국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등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1,974억원(64.4%)으로 전년(1,181억원(44%)) 대비 20.4%가 증가되는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잔액의 활용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기준일: '18.2.28. /단위: 억원)

	교	부	집	행	집형	생잔액	비	고
구 분	교부액	교부율	집행액	집행률	잔 액	불용률	변경 승인액	반환액
합 계	3,066	100.0	1,092	35.6	1,974	64.4	34	-
종로구	76	2.5	16	21.1	60	78.9	ı	1
중 구	82	2.7	25	30.5	57	69.5	-	ı
용산구	79	2.6	11	13.9	68	86.1	-	-
성동구	109	3.5	40	36.7	69	63.3	1	ı
광진구	125	4.1	90	72.0	35	28.0	-	ı
동대문	147	4.8	41	27.9	106	72.1	1	1
중랑구	144	4.7	42	29.2	102	70.8	23	1
성북구	136	4.4	36	26.5	100	73.5	1	1
강북구	141	4.6	46	32.6	95	67.4	ı	1
도봉구	119	3.9	33	27.7	86	72.3	1	1
노원구	181	5.9	76	42.0	105	58.0	1	1
은평구	154	5.0	31	20.1	123	79.9	ı	1
서대문	196	6.4	112	57.1	84	42.9	-	-
마포구	128	4.2	69	53.9	59	46.1	2	1
양천구	121	3.9	53	43.8	68	56.2	8	ı
강서구	152	4.9	38	25.0	114	75.0	ı	1
구로구	134	4.4	53	39.6	81	60.4	ı	1
금천구	91	3.0	20	22.0	71	78.0	ı	1
영등포	137	4.5	32	23.4	105	76.6	1	1
동작구	107	3.5	23	21.5	84	78.5	1	-
관악구	123	4.0	38	30.9	85	69.1	1	-
서초구	90	2.9	34	37.8	56	62.2	ı	-
강남구	16	0.5	8	50.0	8	50.0	ı	-
송파구	132	4.3	51	38.6	81	61.4	-	-
강동구	146	4.8	74	50.7	72	49.3	-	-

^{*} 집행액은 자치구 제출 기준

- 특히,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교부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고 있어 자치구에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행정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집행되어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주요 내용〉

- 자치구 합리적 재원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액을 확인해보면 <u>상반기 6월까지 73,497백만원(27.4%)로 교부금액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교부하고 있음</u>.
-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되면 설계, 계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또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각 지자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 교부금의 조기교부가 필요함. 특별교부금 신청 내용의 검토·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지만, 교부금 신청내용의 신속한 검토·심사로 상반기 중에 조기 교부하여 줄 것을 권고함.
- ※ 행정국에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의 활용실태 및 관리 감독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자치구별 실태파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	6년	201	5년
월별/구분	교부액	비율	교부액	비율
	(누적액)	(누적)	(누작액)	(누적)
1월	5	0.00		0.00
2월	12,081	4,50	3,505	1,60
	(12,081)	(4,50)	(3,505)	(1,60)
3월	33,358	12,40	6,098	2,70
	(45,439)	(16,90)	(9,603)	(4.30)
4일	10,908	(4,10)	2,500	1,12
	(56,347)	(21,00)	(12,103)	(5,40)
5일	(56,347)	(21,00)	31,891 (43,994)	14,40 (19,80)
6월	17,150	6,40	28,350	12.76
	(73,497)	(27,40)	(72,344)	(32.60)
7일	22,880	8,50	6,078	2,73
	(96,377)	(35,90)	(78,422)	(35,30)
8월	(96,377)	(35,90)	10,940 (89,362)	4,90 (40,20)
9월	21,315	7.90	6,870	3,09
	(117,692)	(43,80)	(96,232)	(43,30)
10월	29,903	11,10	76,953	34,64
	(147,595)	(54,90)	(173,185)	(78,00)
11월	61,107	22,70	24,097	10,84
	(208,702)	(77,70)	(197,282)	(88,80)
12월	59,984	2,30	24,847	11,20
	(268,687)	(100,00)	(222,129)	(100,00)
계	268,687)	222,129)

2)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실 집행 개선 필요

○ 행정국은 관련 법률 등에(「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지방재정법」) 근거하여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있음.

〈2017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보조금	보조금		정산내	역		집행률
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
계	755,000	735,207	19,876	19,793	83	0	97.4
새마을회	376,000	366,749	9,280	9251	29	0	97.5
자유총연맹	60,000	60,000	16	0	16	0	100
바르게살기	260,000	255,948	4,078	4052	26	0	98.4
민주평통	59,000	52,510	6,501	6490	11	0	89.0

-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시지적에도 불구하고, 타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89%)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국은 집행률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각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이 25.6%로 2016년(평균 63.7%) 대비 38.1%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새마을회(14.4%) 및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19.5%)의 경우에는 타 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지출	· 방법			보조금	세금	인건비
단체명	집행액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카드 사용비율 (%)	계산서 비율(%)	지출비율 (%)
계	735,207	188,287	520,357	26,563	0	0	25.6	70.8	3.6
새마을회	366,749	52,991	308,108	5,650	0	0	14.4	84.0	1.6
자유총연맹	60,000	48,548	3,872	7,580	0	О	80.9	6.4	12.7
바르게살기	255,948	49,970	196,245	9,733	0	О	19.5	76.7	3.8
민주평통	52,510	36,778	12,132	3,600	0	О	70.0	23.1	6.9

- 행정국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은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2쪽

5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 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라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u>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u>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u>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u>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u>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u>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잦은 이월 최소화 필요

- 행정국의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시청사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1억 3천 9백만),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2천 1백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천 9백만원) 총 3건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120억2천백만원)', '감리비(3억9천5백만원)', '시설부대비(2천2백만원)' 등 총 128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이월처리하였음.

(단위 : 천원)

	-1-11	과목	2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연도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Ø	행위액	9	명시 이월	사고 이월	Ø-U- ©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139,269	1		139,269	416,003
2017년	일반 회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 활성화	사무관리비	3,751,331	3,299,469	3,278,469		21,000	451,86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무관리비	6,883,871	6,814,865	6,795,665		19,200	69,005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	12,420,279	_
2017년	특별 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_	395,272	_
	71/11	ч	시설 부대비	32,000	9, 193	9,193	_	22,807	_

○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23억 7천 7백만원(63.7%)을 명시이월시켰으며, 2016회계연도(165억 2천 9백만원(88.9%)을 이월)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음.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2017년도 이월 현황〉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7	행위액	<u>(</u>	이월액©	⑦-U-G
		계	18,264,373	18,241,566	5,426,015	12,838,359	_
사고 이월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12,420,279	-
이열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395,272	_
		시설부대비	32,000	9,193	9,193	22,807	_

○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사고이월시킨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는 71.3%(2천 2백만원)를 불용시키는 등 이월사업비를 부실하게 관리 및 집행하고 있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한 이월사업비의 집행결과 내역〉

세부		2016→ 2017		사		2017→	2018	이월액		불용
사업 명	통계목	2017 이월액 (A=a+b)	명시 이월 (a)	고 이 월 (b)	지출액 (B)	계	명 시 이 월	사고이월	불용액 (C=A-B)	量 (C/A)
	소계	16,528,746	16,528,746		5,226,015	12,838,359		12,838,359	11,302,732	68.4%
ПО	시설비	15,486,746	15,486,746		4,602,094	12,420,279		12,420,279	10,884,652	70.3%
서울 기록 원 건립	감리비	1,010,000	1,010,000		614,728	395,272		395,272	395,272	39.1%
선립	시설 부대비	32,000	32,000		9,193	22,807		22,807	22,807	71.3%

- 예산의 이월은 당해 사업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 연도로 넘겨쓰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행정국은 향후,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민간위탁금 및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금 관련

○ 2017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3건으로 43억 9천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43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2백만원(1%)을 불용 처리하였음.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예산〉

(단위: 천원)

	민긴	<u></u> 위탁 기긴		민간위탁금		TI = 11 0 11		10=	불용
위탁사무명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유
계				4,390,455	4,376,925	4,368,643	21,812	0.5%	
서천연수원	2016.7.1	2018.12.31	일반	2,018,148	2,018,148	2,018,148	0	0	
수안보연수원	2017.6.1	2019.12.31	일반	2,033,130	2,019,600	2,016,300	16,830	0.8%	수안보 연수원 입찰 낙찰차액
힐 링 센 터 쉼 표 운 영	2016.2.23	2018.12.31	일반	339,177	339,177	334,195	4,982	1.5%	상담사 퇴직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2)와 「동 조례

²⁾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u>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u>,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u>위탁기간의 만료 90일</u>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u>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u>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8조의23)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감독 결과서에 따르면, 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대장, 객실이력카드 현행화 및 프론트 자료관리, 물품 및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미흡으로 지적되었는 바, 물품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출연금 관련

○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7%)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세출결산〉

		예 산 액	예산 성립후	예산현액	지출원인	집 행 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			잔 액
7	분	1 D	증감액 ⁻	(F) = (7) + (L)	행위액ඓ	1	계	명 깃	사고	
2017	계	3,331,205	0	3,331,205	3,268,670	3,268,670	0	0	0	62,535
2016	계	2,741,058	6,315	2,747,373	2,583,186	2,583,186	0	0	0	164,187
2015	계	2,637,074	67,150	2,704,224	2,515,468	2,509,153	6,315	0	6,315	188,756

³⁾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u>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u>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u>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u>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지원봉사센터는 "지원봉사센터운영사업" 중 '경비, '여비,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센터의 적극적인 자구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예산전용 현황〉

	예산고	}목	പിച്ചി	Þ	산의 전	용	예산	기호제	집행	21 Ó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감액	중액	전용일	현액	지출액	잔액	사유
		급여	953,669	△15,600	0		938,069	937,989	79	
인건비	인건비	제수당	179,023	△21,400	0		157,623	157,301	321	
인신미	인신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60,754	△6,000	0		54,754	45,085	9,668	
		퇴직급여	95,289	0	16,039		111,328	111,328	0	
		복리후생비	139,582	△4,100	0		135,482	134,957	524	
		여비	23,060	△3,200	0		19,860	19,106	753	
		공공요금및제 세공과금	11,848	△2,800	0	17.12.20	9,048	8,771	276	퇴직급여 충당 금, 성과급 부 족
		소모품미	18,395	△6,900	0		11,495	9,425	2,069	
경비	경비	도서인쇄비	14,181	△1,400	0		12,781	11,370	1,411	
		수선유지비	24,016	△1,045	0		22,971	21,922	1,048	
		차량유지비	3,805	△1,478	0		2,326	1,569	756	
		보험료	1,400	△414	0		985	845	140	
		지급수수료	17,200	△1,479	0		15,720	15,520	200	

	예산과목		പ്പിപ	예산의 전용			예산	カネベ	집행	사유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백	감액	중액	전용일	현액	지출액	잔액	^fπ
		업무추진비	31,200	△9,840	0		21,359	17,524	3,835	
		관서업무비	10,000	△2,400	0		7,600	6,473	1,126	
		자산취득비	46,000	△3,000	0		43,000	42,749	250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83,000	0	65,019		148,019	148,019	0	

○ 특히, 행정국은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지속적 예산 불용 사업의 검토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7%)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시청사 내진보강", "공무직 노사관리",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운영" 등의 경우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사장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6,092,830	5,854,594	0	238,236	3.9%	○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청사 수요증가 예상분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조직 개편 미 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856,179	7,588,650	0	1,267,529	14.3%	○불필요 조명 가동제한 등 에너지절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공공운영비 절감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729	104,885	0	30,844	22.7%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재배정예산 일부 미집행에 따른 집행진액 발생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기타보상금)	15,008	9,216	0	5,792	38.6%	○시민공모전(시청사 북측외벽 예술담)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되지 않아 상금 5백만원 미집행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0	139,269	416,004	74.9%	아시업비 책정 시 대상시설물 준공년수를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용역발주시 정밀점검에 준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발주하여도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용역대가를 재산정
업무택시제 운영 (사무관리비)	270,000	195,610	0	74,390	27.6%	○모바일 앱 결제방법 적응 과도기에 따른 수요인원 감소 및 부서별 한도액 설정을 통한 잔액 발생
기본경비-총무과 (사무관리비)	2,189,693	1,994,767	0	194,926	8.9%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추진 등에 따른 석식 수요 감소로 급량비 집행잔액 발생 ※ 실제 석식수요를 감안하여 2018년 예산 감액편성
기본경비-총무과 (국내여비)	302,400	193,029	0	109,371	36.2%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	100,800	56,236	0	44,564	44.2%	파견종료후 전출 등으로 인한 파견인원 감소로 불용발생(2018년부터 예산 감액편성)
부조급여 지급 (연금지급금)	2,100,000	1,944,761	0	155,239	7.4%	○부조급여 지급대상자의 발생 예측 곤란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발생
공무직 노사관리 (사무관리비)	139,350	84,449	0	54,901	39.4%	○용역결과에 따른 공무직 일괄채용 미실시로 불용발생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832,840	2,531,296	0	301,544	10.6%	○단체보장보험 낙찰차액 및 중도 입사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94,511,119	92,790,211	0	1,720,908	1.8%	○예상 퇴직인원 등을 감안한 익년도 보수총액 산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예측곤란
장기국외훈련 (포상금)	820,463	712,233	0	108,230	13.2%	○훈련비 지원액을 한도액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실 소요액과의 차이 발생
단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2,043,897	1,849,875	0	194,022	9.5%	○훈련 취소 등으로 인한 계획인원 대비 파견 감소(637명 계획→ 612명 파견)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376,800	2,075,224	0	301,576	12.7%	○공로연수 파견인원 감소(380명 편성→226명 파견)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생 감소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1,248,147	1,088,955	0	159,192	12.8%	○국내장기위탁교육생(44명 편성→40명 파견) 감소 및 단기위탁교육 계획대비 신청인원 미달로 집행잔액 발생
명사초청 특강 운영 (사무관리비)	18,900	13,479	0	5,421	28.7%	○현장중심의 시정운영, 강사일정 조정 등으로 2회 개최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26,520	83,178	0	43,342	34.3%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사무관리비)	25,000	5,366	0	19,634	78.5%	○시 간부 공동연수 추진('17.5월)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사행경비)	19,102,566	18,828,669	0	273,897	1.4%	○시간제 예상인원 감소(900명→ 814명), 실적가점 전환저조, 전출입 정산차액 등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10,000	0	0	10,000	100%	○전직원 체육행사 우수 팀 등 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각 실국별 자체 체육문화 행사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음 ※ '18년도 예산편성시 전액 감액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36,506	96,521	0	39,985	29.3%	 대사증후군 및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운영지원 신청자 저조 및 세부사업 집행잔액 * '18년도부터 대사증후군 검진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특정업무경비)	3,120	2,340	0	780	25.0%	○특정업무 경비는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월 정액수당으로 당초 4명 지급예상 편성하였으나, 현원(3명)에 대해 집행하여 잔액발생 ※ '18년도 예산편성시 지급대상인원 조정(4명→3명) 반영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26,800	64,834	21,000	40,966	32.3%	○조기대선으로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지연(9월→ 10~12월)됨에 따라 홍보비 등 감액 지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9,033	1,847,674	0	391,359	17.5%	 조기대선으로 동별 설명회 등 일정 지연으로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동자 치지원관 포함) 사업비 감액교부(10개월 → 7개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10,200	3,314	0	6,886	67.5%	○선거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잔액 발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2,000	6,748	0	5,252	43.8%	○ 길라잡이행사 및 실무협의회 3회 다수 실시에 따른 업무담당 간담회 미실시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코디 네이터 지원·육성 (사무관리비)	33,000	24,750	0	8,250	25.0%	○예산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포항지진피해 관련 물품지원)
시민 시상제도 운영 (공공운영비)	15,556	12,294	0	3,262	21.0%	○용역기간 조정(3월~12월)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6,000	11,911	0	4,090	25.6%	○전국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숍 일정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0,740	74,764	0	25,976	25.8%	○정보공개심의회 효율적 운영으로 운영예산 절감,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PDF파일 배포 확대에 따른 책자 발행부수 축소
기본경비-공무원수권원 (공공운영비)	28,954	22,061	0	6,893	23.8%	○환경개선부담금(건물분) 미집행, 차량유류비 집행 잔액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